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보도의 윤리적 문제

이 재 경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 서론 : 주요 개념과 글의 전개방향

이 논문은 언론윤리의 여러 측면 가운데 취재부문의 두 가지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다. 같은 문제라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전체 논의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자가 뉴스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취재라고 한다. 요즘은 프로듀서들도 적극적으로 사회고발 성격의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들의 작업도 함께 취재 행위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자와 프로듀서를 함께 포괄하기 위해 기자보다는 언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언론인의 취재 행위는 반드시 취재원이라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취재원은 기관일 수도 있고, 문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실존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인은 취재 대상인 사람들과 접촉해서 보도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 같은 상황들은 언론윤리의 문제로 논의된다.

이 글에서 중심문제로 다루는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의 경우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취재행위가 윤리적이거나 법률적으로 정당인가 하는 질문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어떠한 취재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행위인가? 어떠한 취재행위는 실정법으로 게재돼야 하는가? 이 두 질문은 같은 뿌리에서 제기되는 내용이지만 논의의 관점이나 범위에서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앞에서 제기하는 윤리적 관점의 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인 논의를 요구한다면 후자인 법률적 질문은 매우 구체적인 실정법의 조항들에 대한 토론을 요구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좁은 의미의 법률적 토론보다는 좀더 넓은 시각으로 윤리의 차원에서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의 문제를 다루고자 함을 먼저 밝힌다. 글의 시각을 윤리적 방향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언론인들의 취재행위를 취재의 동기와 결과까지를 포괄하는 직업수행과 관련된 윤리의 문제로 보는 편이 논의의 의미를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현장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들과 연결해서 취재의 원칙을 되돌아보고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법률적 검토의 경우 어떠한 사례가 범법행위가 되는가를 논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극히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일관성도 발견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아무리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해도, 언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라면 법률적 접근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언론인들의 법률적 권한을 아무리 확보하고 언론에 대한 법적 제재를 아무리 강화해도 그 같은 조치들 만으로는 좋은 언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접근으로 윤리적 차원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Belsay et at., 1995,

p.465). 영국의 언론윤리 연구자인 앤드루 벨지(Andrew Belsay)와 루스 채드윅(Ruth Chadwick) 교수의 말이다.

좋은 언론은 결국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내적 성찰과 윤리적 의식이 성장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외적 압력과 제재는 오히려 언론인들을 위축시키거나 그들의 행동준칙의 위험을 피하는 방향만을 찾도록 오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글이 법률적 시각보다 윤리적 관점을 취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생각이다.

II . 위장취재와 몰매카메라

미국 시카고의 양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선타임즈(The Chicago Sun-Times) 신문은 977 년에 4 개월 동안 미라지 바(The Mirage Bar)라는 술집을 차려놓고 기자를 종업원으로 위장시켜 시청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를 잠행취재한 적이있다. 많은 기사를 써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나 비윤리적 취재 방식 때문에 풀리쳐 상을 수상하지는 못했다. 당시 풀리쳐 상 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워싱턴 포스트지의 편집국장 벤자민 브래들리 (Benjamin Bradlee)는 "우리 언론인들이 속임수를 밝혀내기 위해 수만 시간을 사용하는 지금 이 시대에, 신문이 속임수를 사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상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Meyer, 1987, p.79).

우리 나라에서는 북한을 잠행 취재 했던 중앙일보의 이찬삼 기자가 대표적인 위장취재의 사례가 아닌가 한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취재대상을 고려해야겠지만 그렇더라도 취재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밖의 사례로는 국민일보의 K 모 기자와 중앙일보 Y 모 기자사례가 있다. 국민일보의 K 모 기자는 1993 년 봄 국회의원 김문기 씨의 상시대 재단비리 사건을 취재 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간부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어 기사화 할 수 있었으나, 뒤에 신분 사칭이 문제돼 검찰 출입을 계속할 수 없었다.(김창룡, 1995) 상문고의 사학재단 비리를 취재했던 중앙일보의 Y 모 기자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서무과장인 김모씨 집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들고 나온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진행됐다. 다행히 기자가 실형을 선고 받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과거취재 관행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다. 재판부는 Y 기자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그 동안의 언론관행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김창룡, 1995)

기자가 신분을 위장하는 일은 이 밖에도 다양한 양태를 띤다. 마약이나 매춘 문제를 취재하기위해 고객으로 가장하는 일, 하급관청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상급 기관원 행세를 하는 일, 병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환자가 되는 일, 사이버 종교 집단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도를 가장하는 일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결국 어떠한 경우까지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다. 신분을 위장하는 것은 물론 나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취재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사안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경우에도 그 같은 취재 방법의 사용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가?

동아일보는 1997년 3월 14일 자신의 병원에서 김현철 씨가 언론사 사장 선임 문제를 정무수석 비서관과 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해 세상에 공개한 의사 박경식씨 경우를 빗대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화제성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요즘은 도처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은행점포에서부터 교통혼잡지역, 그리고 주차장에까지 감시용 카메라가 돌아간다. 이들 카메라들은 고정된 위치에서 주로 범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몰래카메라는 위에 얘기한 정황과는 크게 다른 카메라 사용을 말한다. 언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폭로하기 위해 카메라를 숨겨두고 취재 대상을 촬영 하는 행위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은행 점포나 교통 혼잡 지역 경우 등과 달리 촬영되는 사람은 자신이 촬영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특수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눈 앞에서 자신을 찍고 있어도 취재 대상이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나라 방송들은 요즘 이 같은 취재 기술을 대단히 빈번히 사용한다. '카메라출동', '시사매거진 2580', '카메라 현장' 등의 폭로성 프로그램들은 몰래카메라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제작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다. 망원렌즈를 사용하면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적외선 취재장비를 사용하면 어둠의 장벽도 뛰어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는 특히 취재가 어려운 대상을 공략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됐다. 이렇게 이 같은 취재기법이 빈번하게 사용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두려움도 비례적으로 높아 간다. 카메라 취재 기자들 또한 그 같은 사회적 반감이나 취재기법이 갖는 문제점을 자각해 몰래카메라 촬영을 엄격한 판단기 준을 적용해 자제 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미디어오늘, 1997년 5월 5일). 이들은 이 선언에서 카메라 촬영시 법적 책임은 취재를 지시한 보도 간부와 회사 대표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현장 취재 기자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사실상 몰래카메라 기법은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ABC 방송이 이 기법을 사용해 상한 고기를 파는 식료품점을 프라임 타임 라이브(Prime Time Live)라는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에서 고발했다가 취재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로 해당회사에 5 백 50 만 달러나 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푸드 라이온(Food Lion)이라는 식료품점이 비위생적인 상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방송 담당자들이 신분을 위장한 사기와 무단침입 죄를 범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요지다.

이 같은 미국 병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추적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 영역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사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사병적 판단이다. 반대쪽에서는 경찰도 보호해줘야 하는 시민의 사생활권을 언론인들에게 자유롭게 침해해도 좋은 특권을 부여 하는게 정당한가 하는 의문 또한 계속 제기돼 왔었다. 과연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에게는 어느 정도의 취재자유가 보장돼야 하는가?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는가? 신분위장 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기법의 활용은 어떠한 윤리적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언론윤리강령은 이 같은 문제의 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III. 언론 윤리 문제 접근을 위한 이론적 토대

언론윤리 : 쟁점과 사례들 (Media Ethics : Issues and Cases) (1991)이 라는 책을 쓴 패터슨과 윌킨스(Patterson 과 Wilkins)는 언론윤리 문제를 토론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아리스토텔레스와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윌리엄 데이비드 로스(William David Ross) 등 네 사람의 작업에서 찾는다. 패터슨과 윌킨스는 기본적으로 취재보도 행위의 전 과정은 윤리적 의사결정(Ethical decision-making)을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의사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복잡한 요소들을 정돈하고 행위자가 나름대로 어떠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결정의 기준이 되는 행동 준칙인 철학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패터슨과 윌킨스의 설명을 따르면, 윤리적 행위의 기준은 인류 역사와 함께 서서히 변화를 거쳐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윤리적 행위의 규범은 중용의 원칙(Golden Mean)이었다. 그는 윤리적 행위를 설명하는 예로 비겁함과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맹목적인 용기의 세가지 행동방향을 설정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윤리적인 행동은 비겁함과 맹목적 용기를 버리고 중간값인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미덕은 양극단점의 중간에 위치한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선택은 피한다는 뜻이다. 그의 원칙은 그러나 이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현실적 고려사항 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중용의 원칙은 현실에서는 행동영역별로 어느 한 고정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조건들 속에서의 중도적 선택을 의미한다.

칸트의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관점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원칙을 제시 했다면 칸트는 사람보다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행위자체를 관심의 초점에 둔다. 칸트가 제시 하는 원칙은 "개인은 스스로 자신을 위 해서취하는 선택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언론인은 신분을 사칭하거나 카메라를 숨겨 두고 취재원을 대하면 안 된다. 그 같은 행위를 허용하면 보편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은 실용주의자(Utilitarianist)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행위 준칙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와 또 다르다. 이들은 행위자(The actor)나 행위(The action)보다 오히려 행위의 결과(Consequences of actions)에 주목한다. 만약에 어떠한 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그 행위는 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비리를 추적해 보도하거나 사회적 부조리를 심층 조사하는 취재보도 행위들은 대부분 이 같은 실용주의적 윤리관으로 정당화 된다. 취재 과정에 부분적인 잘못들이 있다 해도 보도 행위가 사회 전체를 위해 긍정적 기여를 하면 관찮다는 가치판단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철학자에 따른 윤리적 관점의 변화

철 학 자	주 장	요 경	강 조 대 상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미덕은 극단점들의 중간에 위치	행위자 (The actor)
칸트	보편적 도덕률	행위가 보편법칙이 되도록 선택하라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행위 (The action)
밀	실용성	행위의 정당성은 바람직한 결과이후에 좌우된다	결과 (The outcome)

자료 : Patterson과 Wilkins (1991. p.11) 표 옮김

그런가 하면 다원론적 가치 이론(Pluralistic Theory of Value)을 주장하는 윌리엄 로스(William D. Ross)는 벤담과 밀의 실용주의적 입장을 더 확장해서 많은 경우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의 가치가 경쟁적으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나 밀이 하나의 궁극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데 비해 로스는 다원적 가치 기준을 주장한다고 하겠다. 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윤리적 가치들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어느 한 가치가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로스는 여섯 가지의 의무(duty)를 다원적 가치들로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여섯 가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성실성의 의무 (duties of fidelity) :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
2. 감사의 의무 (duties of gratitude) :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 준 행위에 대한 고마움 강조
3. 정의의 의무 (duties of justice) : 즐거움과 행복의 공평한 분배 강조
4. 선의의 의무 (duties of beneficence) :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베풀 것 강조
5. 자기 발전의 의무 (duties of self-improvement) : 자기 자신의 조건들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무
6. 타인을 해치지 않을 의무 (duties of not injuring others) : 유일한 부정적 의무로 행위의 윤리적 결정은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강조

패터슨과 윌킨스는 로스의 이 같은 다원주의적 윤리관이 현대 언론윤리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현대 언론인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판단하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역시 지켜야 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느 가치를 희생시킬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그들의 주장을 보면, 로스의 다원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윤리 논의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 언론학계와 같은 체계적인 윤리학적 토대를 기초로 전개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문제 상황들이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면 그 같은 상황에 대한 일회적 조명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다. 그러다 보니 취재보도 행위가 어떻게 인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가?, 실정법에 비추어 보면 특정 취재행위는 어떠한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가? 등이 이 같은 연구들의 주요 논점이었다. (김병국, 1992 ; 최창섭, 1994 ; 김창룡, 1995 ; 이재경, 1996).

언론윤리나 취재보도 관련 법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적은 점도 이 같은 상황에 기여했지만, 그보다는 현업에서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지금까지는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와 관련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드물었던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지금 와서 취재보도의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언론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의식을 키워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힘센 언론사이기 때문에 따져야 스스로만 피곤할 뿐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 같은 대가를 치루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독자적의식이 성장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국내의 연구축적이 적기 때문에 이 글의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위장취재나 몰래카메라 취재 문제에 대한 검토도 국내의 이론적 틀을 통해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소개한 국민일보 K 모 기자와 중앙일보 Y 모 기자의 사례가 실제로 정리된 몇 안 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두건의 사례에 대한 해결 방식은 달랐지만 윤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두 사례는 모두 담당기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의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취재 기자들이 그 같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검토했던 선택의 방향들이나 그 과정에 겪었던 내적 갈등이나 고민, 그리고 그 같은 행동 결정에 보도 책임자들은 관여했는지 아닌지의 여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취재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수습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등은 검토될 여지조차 없었다.

이 글은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몇 가지 윤리관적 입장을 원용해서 위장 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 행위의 경우 현장에서 취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고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취재원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 같은 취재행위는 어떠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그 같은 문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각 언론사와 언론 단체들이 제정해 시행 하고 있는 언론윤리 강령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IV. 위장 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의 윤리적 검토

1. 위장 취재의 여러 모습

위장 취재는 크게 보면 속임수(deception)의 범주에 속한다. 언론인이 취재원을 속이는 행위라는 뜻이다. 따라서 방법상으로는 분명한 결함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위장 취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때 위장 취재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위장 취재는 앞에서 김창룡(1995)의 분석에서 소개 된 K 모 기자나 Y 모 기자 경우처럼 취재원을 대면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시하는 행위 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두 기자처럼 검찰 수사요원을 가장할 수도 있고, 불법적 영업을 하는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는 고객을 가장한다. 특별한 사회집단의 일원으로 잠입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이찬삼 기자처럼 관광객을, 때로는 상인을 가장해 폐쇄된 사회를 취재 하기도 한다.

위장 취재의 다른 유형으로는 언론인임을 밝히기는 하되 취재 목적을 거꾸로 말하는 행위가 있다. 신분을 위장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취재원에 접근할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취재원의 긍정적인 측면을 취재 한다고 목적을 밝히면 많은 경우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는 것이 일반 반응이다. 언론인들은 이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결과적으로는 취재원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기사를 쓰게 된다. 신분을 속이지는 않았지만 취재의 의도를 거꾸로 말하는 경우라 하겠다.

또 다른 유형의 위장 취재로는 신분을 제대로 밝히고 취재 목적도 밝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 언론인이 무언가 기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마치 아는 듯이 함정을 파서 취재원으로 하여금 관련사실을 털어놓게 하는 취재기법이 이 같은 유형에 속한다. 워터 게이트 사건때 워싱턴 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와 칼 번스타인(Carl Bernstein) 기자가 많이 사용한 방법 이다.

칸트의 보편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위장 취재는 어떻게 설명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취재 기법이다. 취재원이 속임수를 써서 언론인을 대하는 경우를 언론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 같은 상황을 모르고 기사화 한 경우 담당 언론인은 사실 확인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

벤담과 밀의 윤리준칙을 따르면 사회적 이익이 위장 취재 기법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클 경우 위장 취재는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의 이름으로 합리화 된다. 로스의 다원적 윤리관을 적용하면 상황에 대한 검토는 더 많은 가치들의 고려를 요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에 더 중요한 비중이 부여 됐는가를 따져보게 된다.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택하거나 또는 다원주의적 검토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장 취재가 과연 주어진 상황 조건에서 유일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취재원을 속이는 외에 다른 접근법은 모두 불가능했는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의 편의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는 않았는가?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또 한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은 성공적으로 취재가 끝난 뒤 자신의 신분을 잘못 알고 있는 취재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취재가 끝나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은 뒤에는 신분을 밝히는 편이 나은가 아니면 그 경우에도 기사가 나갈 때 까지는 계속 숨기는 것이 바람직 한가?

취재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은 가능한 빨리 아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자기 주면 사람이나 상사에게 변명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될 경우 기사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취소당할 위험도 있다. 어떠한 경우가 됐거나 신분을 속이거나 취재 목적을 속이고 취재한 언론인의 경우는 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개인적인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처리방식을 계속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하겠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취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취재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처리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윤리적 언론(Ethical Journalism)이라는 책에서 필립 마이어(Philip Meyer)(1987)는 "위장 취재의 도덕성은 언론인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자신을 위장하는가와 반비례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취재원을 속이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교활한 행위이므로 지나친 위장은 삼가라는 뜻이다. 그는 또 신분을 위장하지 않고는 언론인이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저히 정당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가 아니면 이 같은 접근법은 안 쓰는 편이 좋다고 충고한다. 쉽게 취재하기 위해 또는 습관적인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정당하지 않은 취재 경로는 언론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몰래카메라 기법의 윤리적 검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 기법은 속임수라는 면에서는 위장 취재와 같다. 취재원은 자신이 언론의 취재대상이 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현격하게 다른점은 언론인과 취재원 사이에 카메라라는 장비가 개입되는 점이다. 몰래카메라도 몇 가지 경우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초소형 카메라를 언론인이 안보이게 소지하고 취재원과 접촉하는 경우다. 이 때 언론인은 몰래카메라와 동시에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위장한 신분으로 몰래 카메라 기법을 사용해 취재원을 촬영한다는 뜻이다. 다른 경우는 신분은 밝히지 만 카메라는 숨기는 상황이다. 취재원이 대화에는 동의하지만 그림 촬영에는 동의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카메라를 내놓고

취재해서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이 같은 기법이 사용된다. 또 한가지 경우는 카메라를 바닥에 마치 꺼져있는 것처럼 놓아두고 취재원을 안심시킨 뒤에 취재원과 대화 내용과 현장 상황을 조명없이 카메라에 담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화면은 취재원의 발과 의자가 가득 채우는 양태를 띤다. 이밖에 망원렌즈를 사용한 원격 그림 촬영 등도 몰래카메라의 한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취재는 아니지만 전화를 걸어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해 방송하는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언론인은 신분을 위장할 수 있다. 또 전화의 경우는 신분은 밝히지만 녹음 사실은 밝히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경우 취재원은 자신의 육성이 방송에 그대로 이용될 줄을 모른다는 점에서 이 또한 중요한 속임 취재의 사례가 된다.

몰래카메라 취재 기법은 거의 매일 텔레비전뉴스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문화방송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도 불법 유통되는 일본 음반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기법이 사용됐다. 불법 행위의 현장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전자 장비가 영상 취재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 준다는 기술적 가능성 때문에 언론인들이 너무 손쉽게 이 같은 취재 기법을 남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백담사의 전두환 씨를 찍은 사진이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운동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 황색 언론에 파는 행위 등은 몰래카메라가 텔레비전 뿐 아니라 스밀 사진의 영역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돼온 기법이라는 사실을 상기 시켜준다.

블랙(Black)과 스틸(Steele), 그리고 바니(Barney) 등은 Doing Ethics in Journalism(1995)이라는 책에서 몰래카메라 기법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원하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야 한다. 공중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내용이 거나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여야 한다.

-몰래카메라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다른 수단이 사용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취재기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언론인은 자신이 행하는 속임수의 내용과 그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같은 취재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방송사나 언론인이 모두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속임수 취재가 예방하는 폐해는 그 같은 행위가 만들어내는 폐해에 비해 커야 한다.

-몰래카메라 취재기법을 사용하는 언론인은 사려 깊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이 같은 점검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몰래카메라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상을 타기 위한 행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

-일반적인 취재 방법에 비해 더 적은 돈과 노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다른 언론인들이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려 할 때

-취재하는 기사의 주제가 비윤리적인 내용일 때

결국 취재의 편의를 위한 속임수, 적은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의 몰래카메라는 윤리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정리된다. 몰래카메라 취재 행태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지나친 도덕적 우월감이다. 취재 대상인 사람들이나 행위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불의에 속하기 때문에 그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구태여 윤리적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선입견이 특히 우리 언론인들에게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더욱 더 거리낌없이 몰래카메라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뉴스가 문제가 된 사례로 전남 신안의 한 경찰관이 입은 피해를 들 수 있다. 도서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는 이 경찰은 1996년 12월 24일 방영된 고발성 기사에서 돈을 받고 야생 동물의 밀렵을 눈감아 줬다는 내용의 당사자로 인정돼 사흘 뒤인 12월 27일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해당 경찰관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KBS는 경찰관의 반론을 방송해줘야 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KBS의 취재팀이 야생동물 보호단체 활동원과 함께 밀렵꾼을 가장하고 경찰에 접근해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려 한 점과 소형 카메라를 기승에 숨기고 그러한 과정을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없이 녹화한 점, 그리고 계속 돈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 억지로 돈을 넣어 주고는 뇌물 수수 현장을 포착한 것처럼 방송한 사실 등이다.

이 같은 취재 행위는 앞서 제시한 몰래카메라 취재에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윤리준칙을 모두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들의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재원을 함정에 빠트리는 일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을 형성 한다고 까지 보여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취재행위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직접적인 물질적, 정신적 피해자를 남는다는 사실이다. 부당한 취재의 대상이 된 것도 억울한 데 일자리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ABC가 푸드라이온 사에 5백만 달러 이상을 물어 주도록 판결 받은 정황은 취재원을 적극적으로 함정에 빠트리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경찰관의 피해는 미국의 경우보다 한결 위중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적 여러 조건 덕분에 방송사는 심각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중재신청서에서 자신은 취재진들이 언론사 취재활동 중이었던지를 전혀 몰랐고 취재진들도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자신에게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방송전이라도 알려 줬으면 자신의 피해가 줄어들었거나 또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언론이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편의적으로 취재원을 대하는가를 만적으로 보여준다.

몰래카메라와는 다르지만 취재원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사용하는 행위도 중요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다. 미국의 언론윤리 교재들은 하나같이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한다. 미국 법에 따르면 제 3자들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도청이지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경우는 녹음이 범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는 그 같은 녹음내용을 공개 적으로 상품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윤리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학자들의 입장이다. 마이어(Meyer, 1987)에 따르면, 몇몇 신문의 경우, 취재원과 통화 녹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후에 기사 때문에 법정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우리 언론은 몰래카메라 뿐 아니라 전화 녹음의 경우에도 사려깊은 윤리적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더구나 언론인이 아닌 보조원들이 전화를 걸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빈도도 크게 늘고 있다. 이는 혹시라도 그 내용이나 녹음의 사용이 문제가 될 경우 언론사에는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V. 결론 : 문제의 취재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문제 상황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시 두 갈래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ABC 대 푸드라이온사의 소송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법률적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적극적 법률행위가 전제된다.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개입해서 구속력 있는 판결을 통해 언론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취재 활동의 허용기준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우리 나라 경우는 김현철 씨와 한겨레신문의 명예훼손 소송건이 이같은 접근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징으로는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의 방법을 들 수 있다. 피해자나 언론사 모두의 노력과 부담을 적게 하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운영되는 제도다. 중재위원회의 결정들은 법원의 판례만큼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들의 파급효과 면에서는 제한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고 당사자들의 심적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법률적 접근의 약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수많은 문제 상황들 가운데 불과 극소수의 사례들만이 법정까지 가게 되고 대부분의 피해 사례들은 잊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대표성이 있는 사례들은 중요한 이정표적 의미가 부여되고 유사한 취재나 보도행위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유형이나 같은 유형 이더라도 상황적 구성조건이 다른 많은 사례들은 법률적 또는 공론적인 조명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그 범위에 관련된다. 법률적 해결이 축적되면 언론은 활동 범위를 좁히거나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명예훼손의 경우 힘있는 기업들이나 저명인사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패소의 위험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가 법률적 해결을 가장 바람직 한 접근법으로 추구하고 장려하면 당연히 언론의 공익적 기능에까지 의도하지 않은 타격이 오게 마련이다. 법률적 접근법보다 더 폭넓게 활용되는 방법이 이 글의 주요 논지를 형성하는 언론 윤리적 접근이다. 문제의 상황을 언론인과 취재원 간의 직업윤리, 또는 일반 윤리적 시각에서 정의하고 그 같은 기본적 인식을 토대로 더 남은 언론보도 관행과 취재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으로서의 도리, 같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 윤리의 문제 등을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접근법이라는 점이다.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각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더 바람직한 취재를 할 수 있고 취재원의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가의 적극적인 고려에서 출발한다. 이 접근법은 또 직업 전체의 명예와 자긍심을 바탕에 깔고 문제의 상황을 보도록 요구하며, 동료들과 더 나은 취재관행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언론윤리적 접근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제도는 윤리강령의 제정이다. Code of Practice, Code of Ethics 등으로 불리는 이 윤리강령은 대체로 추상적인 원칙을 제시해서 언론인들의 행동 지침적 기능을 한다.

레이틸라(Laitila, 1995)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는 30 여 국가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거의 전 유럽 국가들이 윤리강령을 갖고 있다고 보아진다. 윤리강령의 대상은 언론인들만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20 개국으로 가장 많고 발행인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5 개국이다. 프레스 카운실(Press Council)로 불리는 신문평의회는 모두 18 개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 같은 윤리강령을 통한 접근은 그러나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밀지와 채드윅의 연구를 보면 영국의 윤리강령의 경우 조항들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성 있는 상황들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다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첨부해 전체 강령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그들의 지적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언론윤리강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언론인들이 그 내용에 많은 무게를 실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각 회사별 취재준칙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 또한 현장 기자들의 머리 속에 뚜렷한 가치기준으로 자리잡고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KBS 의 밀렵꾼 보도 사례 같은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는게 아닌가 싶다.

필자는 윤리강령의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언적 강령이 갖는 한계 또한 분명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론인 개개인의 윤리 의식이다. 언론인은 누구나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윤리적이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상대방이 있고 그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 생각에는 윤리강령의 제정과 홍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언론사에서나 사회에서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언론인 교육프로그램에 윤리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잡지들은 끊임없이 윤리 문제를 토론 주제로 다뤄야 한다.

벨지와 채드윅(1995)은 이와 관련해 미덕을 갖춘 언론인(The Virtuous Journalist)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언론인의 이상형이 아닌가 한다. 그 같은 언론인을 상정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터슨과 월킨스(1991)가 제시하는 시셀라 북(Sissela Bok)의 모델도 도움이 된다. 그녀는 두 가지 전제를 윤리적 결정은 필요로 한다고 한다. 하나는 윤리적 결정에 관련된 언론인들은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사회적 신의가 근본적인 가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그녀는 윤리적 결정이 필요할 때 세가지 질문을 전략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첫째 질문은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질문은 같은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자신의 행동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미덕을 갖춘 언론인이나 시셀라 북이 제시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한 테스트 모두 매우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장의 압력에 쫓기는 현업 언론인들은 자칫하면 이 같은 기본적 가치를 간과하기 쉽다. 위장 취재나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언론인들의 윤리적 검토가 좀더 일상화하고 취재관행도 선진화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Belsey, Andrew and Chadwick, Ruth. (1995) , "Ethics as a Vehicle for Media Qualit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0(4) : pp.461-473.

Black, Jay, Steele, Bob and Barney, Ralph. (1995), Doing Ethics in Journalism A Handbook With Case Studies. Boston: Allyn and Bacon.

Christians, Clifford. (1995) , "Review Essay : Current Trends in Media Ethic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0(4) : pp.545-558.

Hamelink, Cees J. (1995), "Ethics for Media User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0(4) : pp.497-512.

Laitila, Tuna. (1995), "Journalistic Codes of Ethics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0(4)'pp.527-544.

Lambeth, Edmund B. (1992), Committed Journalism : An Ethic For the Profession.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Meyer, Philip. (1987), Ethical Journalism : A Guide for Students, Practioners and Consumers. Lan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atterson, Philip and Wilkins, Lee. (1991), Media Ethics, Issues and Cases. Madison WI : Brown and Benchmark.

최창섭(1994), "TV의 고발 프로그램과 인권.", 『언론중재』 94년 여름호, pp.6-12.

김창룡(1995), "취재 관행과 법 윤리상의 일고찰", 『언론중재』 95년 봄호, pp.24-35.

김병국(1992), "취재원 접촉 현실과 인권", 『언론중재』 92년 여름호, pp.13-19.

이채경(1996), "현장 고발성 방송뉴스 취재의 문제"한국 외국어 대학교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주관 토론회 발표문, 1996. 10.5.

미디어오늘(1997. 5. 5. 11면), "몰래 촬영하지않겠다" TV 카메라 기자회견 결의.동아일보(1997. 3. 14.), "혹시 몰래카메라에 내 모습 안 찍힐까" 현철 씨 사건 후 녹음-녹화 공포.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 대학 커뮤니케이션 석사, 미국 아이오와 대학저널리즘 박사

□MBC 기자, 한국언론연구원연구위원 역임

□저술: Press freedom and Democratization : South

Korea's Experience and Some Lessons GABETTE 1997, 59(z)